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62호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요금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계량기의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1) 종전에는 19세대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만 보조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었으며
- (2) 상가의 경우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보조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요금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보조계량기의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의2 등).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jun09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세대별계량기의 설치)”를 “(보조계량기의 설치)”로 하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제3항제1호의2 중 “세대별계량기”를 각각 “보조계량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총세대수”를 “총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중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을 “시에서는 급수시설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동주택은 세대별계량기”를 “보조계량기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p>②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각각의 세대별계량기 수는 당초 계량기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p> <p>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급수승</p>	<p>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①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p> <p>③ -----보조계량기----- -----보조계량기----- ----- ----- ----- ----- -----</p> <p>④-----보조계량기-----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 -----</p> <p>⑤보조계량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 -----</p> <p>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p>

현행	개정안
<p>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계량기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9조(권한위임)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1의2. 제6조의2에 따른 <u>세대별계량기</u>의 설치</p> <p>2. ~ 30. (생략)</p>	<p>-----</p> <p>-----</p> <p>-----<u>보조계량기</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권한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u>보조계량기</u></p> <p>-----</p> <p>2. ~ 30.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도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